

검 토 보 고

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2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장애인 재활치료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에서 건립중인 「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」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1.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함.(안제1조)
2. 복지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.(안제4조)
 - 가. 재활 및 지도상담에 관한 사항
 - 나. 의료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
 - 다. 사회적응 지도 및 계몽사업
 - 라.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3. 복지관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.(안제7조)
4.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.(안제8조)

5. 복지관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7~12인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함.(안제11조)
6.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음.(안제13조)
7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모든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함.(안제14조)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이용시설로써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법원읍 금곡리에 건립중에 있음.
- 동 조례안은 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복지관의 업무내용, 직제, 이용료의 징수, 위탁운영, 운영위원회 구성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'장애인복지법'과 보건복지부의 '장애인복지사업지침'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여짐.
-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상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치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,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운영위원회에 의회위원을 포함한 것은 시비 절감 및 의회차원의 통제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그러나 안제5조에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구성 및 인력 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'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'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장애인복지법상의 동 규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'직제기준 및 정원범위'라는 용어는 동 조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,
- 안제6조의 이용대상에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, 국도비 지원으로 복지관이 건립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의 지역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, 건축비 일부등 시비가 투자되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타지역 거주 장애인보다 복지관 운영에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안제7조의 이용료 감면대상중 '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또는 부모 및 자녀', '의사상자보호법 제3조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'이라는 용어는 법률 명칭 및 대상이 실정법상의 용어와 상이한 바, 실정법상의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별표 복지관 이용료를 이미 복지관 운영중에 있는 부천시와 비교해 보면 30~50%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, 여러 가지 여건상 대도시인 부천시거주 장애인보다 당시 거주 장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<복지관 이용료 비교>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 고
		과주시	부천시	
물 리 치 료	1인1개월	20,000	15,000	
작 업 치 료	1인1개월	20,000	15,000	
언 어 치 료	1인1개월	20,000	15,000	
조 기 교 육	1인1개월	20,000	15,000	
직 업 훈 련	1인1개월	20,000	15,000	
청 각 언 어	1인1개월	10,000	5,000	
장애인자녀유아교육	1인1개월	10,000	5,000	
심 리 치 료	1인1개월	20,000	20,000	
심 리 검 사	1회	3,000	2,000	
기 타 이 용	1회	3,000	-	

※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용료 전액 무료

- 한편 시에서 제출한 복지관 운영계획에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기준보다 축소하여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력자를 제외토록 하였는 바, 이는 우수인력 확보 등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IMF시대를 맞이하여 감축되는 공직자 등의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.